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4 - 24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4. 3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「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」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, 우리구 조례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업무의 일관성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도로굴착복구 시 견고한 기층 다짐을 하도록 최소굴착면적 및 최소 굴착폭을 상향 조정(안 별표 1)
- 나.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관리 소홀로 보도를 손괴한 경우 등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산출근거 마련을 위해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의 기준을 추가(안 별표 2)
- 다. 굴착된 토사를 즉시 반출하고 모래로 되메우기 하도록 한 규정에 굴착된 토사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함(안 별표 3)
- 라. 보도상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하도록 한 규정에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계굴착이 가능하도록 허용(안 별표 3)
- 마. 보도공사 정밀시공 및 시민 통행불편 최소화를 위한 서울시 보도정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'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'을 조례에 명문화(안 별표 3)
- 바.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정비

### 3. 주요 토의과제

“ 없음 ”

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로법」 제76조(원인자부담금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14. 2. 3. ~ 2. 23 (제출의견 : 없음)

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

관련조문	평가기준	검토결과	조치사항
제4조(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) ③ 구청장은 굴착행위로 인한 직접손해 인접부분 도로가 균열, 침하, 파손, 선형불량 등으로 도로구조 보존상 추가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복구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.	준수부담의 적정성	마포구, 동작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례에서 규정 하고 있지 않으므로, 재차 검토를 권고함.	반영 여부 : 미반영 - 굴착행위로 인접부분 도로에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, 제4조제3항은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3)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 결과 : 제외법령

4) 2014년 제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 (2014.3.6)

5)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도로 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”를 “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에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“도로복구공사”라 함은”을 ““도로복구공사”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“직접손계부분”이라 함은”을 ““직접손계부분”이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“간접손계부분”이라 함은”을 ““간접손계부분”이란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”을 “도로의 굴착으로 도로복구공사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“직접손계 부분”을 “직접손계부분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별표 1에 의하고”를 “별표 1”로, “별표 2에 의하며”를 “별표 2”로, “별표 3에 의하고”를 “별표 3과 같으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“천재·지변”을 “천재지변”으로 한다.

제3조의2제2항 전단 중 “납부기한 내에 이를”을 “납부기간 내에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「지방세법」 제28조”를 “「지방세기본법」 제91조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2호 본문 중 “도로의 굴착에 의하여”를 “도로굴착으로”로, “도로 복구공사”를 “도로복구공사”로 하고, “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”을 “도로복구공사에 드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소요되는”을 “드는”으로, “추가징수할 수 있다”를 “추가징수하여야 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굴착행위로 인한”을 “굴착행위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부실시공으로 인하여”를 “부실시공으로”로, “징수할 수 있다”를 “징수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별표 1 제2호 중 보도란의 “블록 및 타일류”를 “블록 및 화강석류”로 하고, 구분란 중 최소굴착면적란 및 최소굴착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차도의 간접손괴영향구간란 중 “굴착시”를 “굴착 시”로, “미사용시”를 “미사용 시”로 하고, 차도의 간접 복구비용란 중 “표층시공비”를 각각 “표층 시공비”로 한다.

최소굴착면적	1.2m×1.2m	1.2m×1.2m	1.2m×1.2m
최소굴착폭	1.2m	1.2m	1.2m

같은 호 비고 ① 중 “보도외”를 “보도 외”로, “간접복구용”을 “간접복구비용”으로 하고, 제3호나목 중 “타일류”를 “화강석류”로 하며, 제4호 중 “당해연도”를 “해당연도”로, “아니 한다”를 “아니한다”로 한다.

별표 2 보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보도란 다음에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종 별	부 호	적 용 단 면	적 용 범 위
보 도	일반보도블록	일반보도블록 표층 : 6cm	단, 보·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 동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.
		모 래 : 4cm	
		보 조 기 층 : 10cm	
	소형고압블록	소형고압블록 표층 : 6cm	
		모 래 : 4cm	
화 강 석	표 층 : 3~5cm		
	모래(1:3) : 4cm 콘크리트기초 : 10cm 보 조 기 층 : 10cm		
투수성아스콘	투수성아스콘 표층 : 4cm		
	기 층 : 10cm 모 래 : 5cm		
기 타	기존보도의 단면에 준한다.		

보 도 횡 단 차 량 출 입 시 설	블 록 포 장	보 도 블 록 표 층 : 8cm	단, 기울기가 1/10이상 구간은 모래(3cm)대신 불임모르터(4cm) 적용
		모 래 : 3cm	
		콘크리트기초 : 10cm	
		보 조 기 층 : 15cm	
아스팔트포장	기 층(아스콘) : 5cm	기 층(콘크리트) : 15cm	기층은 와이어 매쉬 포함 기층과 표층 사이 택코트
		표 층(콘크리트) : 15cm	기층과 표층 사이 그라우트 (접착식) 및 분리막(비접착식) 적용
콘크리트포장	기 층(골재) : 15cm	표 층(콘크리트) : 15cm	
		기 층(골재) : 15cm	
기 타	기존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의 단면에 준한다.		

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 중 제2호, 제3호, 제6호,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굴착된 부분에 대하여는 모래로 되메우기를 한 후 물다짐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굴착된 토사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다. 이 경우 롤러, 콤팩터, 소형램머 등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층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층(200mm이하)마다 KS F 2312의 C, D, E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 밀도의 95%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.

3. 포장도로 굴착 시에는 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포장층을 직선으로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복구 시에는 신·구 포장의 접합부분을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하며, 보도상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행공간 확보 등 안전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계굴착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계굴착으로 인한 굴착부분 이외의 보도블록 파손이나 침하 등 시설물 손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, 손괴 발생 시 굴착 원인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비용을 도로관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.
6. 도로굴착공사 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매설물 관리부서와 협의, 매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고 손괴 시에는 해당 소유자나 관리자의 확인하에 원상복구하여야 한다.
7.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, 도로포장설계·시공지침(국토교통부) 및 도로굴착·복구업무처리규칙(서울특별시, 서울특별시 마포구),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(토목편),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등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.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·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로법」 제76조에 따른 도로 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“도로복구공사”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해부분 또는 간접손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.</li> <li>2. “직접손해부분”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.</li> <li>3. “간접손해부분”이라 함은 직접손해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해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.</li> </ol> <p>제3조(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) 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「도로법」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에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“도로복구공사”란----- ----- -----.</li> <li>2. “직접손해부분”이란----- -----.</li> <li>3. “간접손해부분”이란----- ----- -----.</li> </ol> <p>제3조(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) ① ----- ----- 도로의 굴착으로 도로복구공사가----- -----</p>

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6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(이하 “원인자부담금”이라 한다)을 징수한다.

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케부분 및 간접손케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. 다만,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케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케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할 때 도로복구공사굴착 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의 산출방법은 별표 1에 의하고,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에 의하며,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고,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정한다.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② -----  
-----  
-----

직접손케부분-----  
-----

③ -----  
-----

----- 별표 1-----  
----- 별표 2-----

별표 3과 같으며-----  
-----  
-----



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. 다만,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3. 천재·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

⑤ (생략)

제3조의2(부담금 등의 강제징수)

① (생략)

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「지방세법」 제28조를 준용한다.

제4조(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) ①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

④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천재지변-----  
-----  
-----

⑤ (현행과 같음)

제3조의2(부담금 등의 강제징수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납부  
기간 내에-----  
-----.  
----- 「지방세기  
본법」 제91조-----.

제4조(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) ① -----  
-----

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손케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. 다만,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

3. (생략)

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처음에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굴착행위로 인한 직접손케 인접부분 도로가 균열, 침하, 파손, 선형불량 등으로 도로구조 보존상 추가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복구비용

-----  
-----  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도로굴착으로-----  
-----  
----- 도로복구공사에  
드는 -----  
-----.  
-----  
-----

3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드는 -----  
-----  
추가징수하여야 한다.

③ ----- 굴착행위에 따른 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을 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

제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-----  
-----.

④ -----  
----- 부실시공으로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징수하여야 한다.

제5조(시행규칙) ----- 시행에 -----  
-----  
-----.

## [별표] 신·구대비표

현 행				개 정 안			
<p>[별표 1] 도로복구공사굴착 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</p> <p>2. 최소굴착면적, 최소굴착폭, 간접손케영향구간 및 복구비용</p>				<p>[별표 1] 도로복구공사굴착 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(제3조제3항 관련)</p> <p>2. 최소굴착면적, 최소굴착폭, 간접손케영향구간 및 복구비용</p>			
구분	차 도 (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)	보 도		구분	차 도 (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)	보 도	
		블록 및 타일류	투수성아스콘, 아스팔트, 콘크리트류			블록 및 화강석류	투수성아스콘, 아스팔트, 콘크리트류
최소굴착면적	<u>0.7m×0.7m</u>	<u>0.8m×0.8m</u>	<u>0.7m×0.7m</u>	최소굴착면적	<u>1.2m×1.2m</u>	<u>1.2m×1.2m</u>	<u>1.2m×1.2m</u>
최소굴착폭	<u>0.7m</u>	<u>0.8m</u>	<u>0.7m</u>	최소굴착폭	<u>1.2m</u>	<u>1.2m</u>	<u>1.2m</u>
간접손케영향구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-----</li> <li>굴착시 ---</li> <li>•-----미</li> <li>사용시</li> </ul>	(생략)	(생략)	간접손케영향구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-----</li> <li>굴착시 ---</li> <li>•-----미</li> <li>사용시</li> </ul>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복구비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-----</li> <li>표층시공비</li> <li>•-----</li> <li>표층시공비</li> </ul>	(생략)	(생략)	복구비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-----</li> <li>표층시공비</li> <li>•-----</li> <li>표층시공비</li> </ul>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<p>비고 : ① 보도외 -----</p> <p>----- 간접복구용 -----</p> <p>② (생략)</p> <p>3. 굴착폭(B), 간접손케영향구간(b) 및 간접복구단면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간접복구단면</p> <p>(1) (생략)</p> <p>(2) 보도</p>				<p>비고 : ① 보도외 -----</p> <p>----- 간접복구비용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-----</p> <p>(1) (현행과 같음)</p> <p>(2) -----</p>			

- ① (생 략)
- ② 타일류
- ③ (생 략)

4. -----  
 --- 당해연도 -----  
 ----- 아니 한다. -----

[별표 2]  
 포장도로골착 직접복구 표준단면

종별	부호	적 용 단 면	적용범위
보도	일반 보도 블록	(생 략)	(생 략)
	소형 보도 블록	소형고압블록 표층: 7cm 모 래: 4cm 보 조 기 층: 10cm	
	오나 멘트 타일	오나멘트타일 표층: 4.5cm 물 탈 (1:3): 3cm 콘크리트기초: 5cm 보 조 기 층: 10cm	
	투수 성아 스콘	(생 략)	
	기타	(생 략)	

<신 설>

- ① (현행과 같음)
- ② 화강석류
- ③ (현행과 같음)

4. -----  
 --- 해당연도 -----  
 ----- 아니 한다. -----

[별표 2]  
 포장도로골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 
 (제3조제3항 관련)

종별	부호	적 용 단 면	적용범위
보도	일반 보도 블록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	소형 고압 블록	소형고압블록 표층: 6cm 모 래: 4cm 보 조 기 층: 10cm	
	화강 석	표 층: 3~5cm 물 탈 (1:3): 4cm 콘크리트기초: 10cm 보 조 기 층: 10cm	
	투수 성아 스콘	(현행과 같음)	
	기타	(현행과 같음)	

종별	부호	적용단면	적용범위
보도 횡단 차량 출입 시설	블록 포장	보도블록표층:8cm	단, 기울기가 1/10
		모래: 3cm	이상 구간은 모래(3cm)대신 불임모르타
	콘크리트기층:10cm		(4cm)적용
	보조기층 : 15cm		
아스 팔트 포장	표층(아스콘):5cm	기층은 와이어매쉬	
	기층(콘크리트):15cm	포함, 기층과 표층	사이 텍코트
콘크 리트 포장	표층(콘크리트):15cm	기층과 표층 사이	
	기층(골재):15cm	그라우트(접착식)	및 분리막(비접착식)
기타		적용	
	기타	기존 보도 횡단 차량 출입시설의 단면에 준한다.	

[별표 3]

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

1. (생략)
2. 굴착된 부분에 대하여는 모래로 되메우기를 한 후 물다짐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당해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3. 포장도로 굴착 시에는 커터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, 보도상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

[별표 3]

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  
(제3조제3항 관련)

1. : (현행과 같음)
2. 굴착된 부분에 대하여는 모래로 되메우기를 한 후 물다짐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굴착된 토사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다. 이 경우 롤러, 콤팩터, 소형램머 등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층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층(200mm이하)마다 KS F 2312의 C, D, E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%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.  
※“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(토목편) 4-8굴착 및 복구공사” 참고
3. 포장도로 굴착 시에는 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포장층을 직선으로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복구 시에는 신·구 포장의 접합부분

로 한다.

4. ~ 5. (생략)

6. 도로굴착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,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.

7.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, 도로포장설계·시공지침 (건설교통부) 및 도로굴착·복구업무 처리규칙(서울특별시, 서울특별시 마포구)등 관련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.

을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하며, 보도상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행 공간확보 등 안전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계굴착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계굴착으로 인한 굴착부분 이외의 보도블록 파손이나 침하 등 시설물손괴기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, 손괴 발생시 굴착 원인이자 원상복구하거나 그 비용을 도로관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.

4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도로굴착공사 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매설물 관리부서와 협의, 매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고 손괴 시에는 해당 소유자나 관리자의 확인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.

7.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, 도로포장설계·시공지침 (국토교통부) 및 도로굴착·복구업무 처리규칙(서울특별시, 서울특별시 마포구),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(토목편),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등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.